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준식  
전화 042-470-4040 / 팩스 042-470-4240

**보도자료**  
2022. 12. 5.(월)

**제목** **빙임으로 영이를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금일(12. 5.)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생후 9개월 친아들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체중감소, 영양결핍,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친아들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방치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하였음
- 친모는 피해아동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4시간 동안 방치 후 뒤늦게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게 하여, **현재 피해 아동은 심정지로 인하여 뇌가 손상된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임**
- 검찰은 계좌영장 및 통신영장청구, 의료자문, 예방접종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범행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자백**받았음
- 또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지원**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1

### 피고인 및 공소사실의 요지

#### ○ 피고인

- A○○(친모, 37세)

※ 피해자 : B○○(남, 생후 9개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 ○ 공소사실의 요지

- '22. 6.~11.경 피해 아동이 분유를 토하자,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여 체중감소, 영양결핍, 탈수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22. 1.~11.경 피해 아동에게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을 5회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22. 11. 8.경 피해 아동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모습을 목격하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4시간 방치하여 피해 아동에게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고 혼수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2

### 수사 경과

- '22. 11. 9.                    검찰, 경찰 신청 구속영장 청구
- '22. 11. 10.                법원, 구속영장 발부
- '22. 11. 14.                경찰, 사건 송치
- '22. 11. 28.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개최
- '22. 11. 14.~12. 2.        검찰, 피고인 조사(3회), 소아청소년과 교수 서면조사, 진료내역 확보, 통신영장 및 계좌영장 청구, 피해 아동 예방접종내역, 영유아건강검진결과 확인 등 보완수사
- '22. 12. 1.                 검찰, 예방접종 미실시로 인한 방임 범죄사실 인지
- '22. 12. 5.                 검찰, 구속기소 및 피해자지원의뢰

### 3

## 주요 수사 결과

- 피고인은 경찰에서 학대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또래 아이의 하루 섭취 권장 열량과 필수 영양성분을 토대로 피고인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음
-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확인한 바, '22. 8. 2.경에는 피해아동의 키가 70.5cm, 체중이 9kg으로 또래 아이 중 각 상위 10%에 해당하였으나, '22. 11. 8.경에는 키가 71cm(하위 10%)로 거의 자라지 아니하고, 체중이 7.5kg(하위 3%)으로 오히려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또한 검찰은 통신영장 및 계좌영장 청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예방접종내역을 분석한 바 피해 아동이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주사를 5회 맞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냈음
-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구청 아동보육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전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논의하였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함

### 4

## 향후 계획

-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피해 아동의 회복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상실 청구를 하지는 아니함 ☐